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고영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225
------	------

발의일자 : 2022. 9. 6.

발 의 자 : 고영찬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의원

1. 제안이유

- 가. 모든 구민이 수혜자가 되는 구민 안전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향상에 기여
- 나.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가지원 미비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보완을 통한 지자체의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 및 보다 적극적인 구민과 구민 가족의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모든 구민이 안전한 금천 실현

2. 주요내용

- 가. 구민 안전보험의 정의(안 제2조)
- 나. 구민 안전보험의 가입대상(안 제4조)
- 다. 구민 안전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안 제5조)
- 라. 구민 안전보험 보험금 산정(안 제7조)
- 마. 구민 안전보험 지급 청구와 지급(안 제8조, 안 제9조)
- 바. 구민 안전보험 보상 제외(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2. 9. 7. ~ 2022. 9.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 (이하 “보험” 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구민” 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

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가입대상) 피보험자는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 외국인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7조(보험금의 산정) 보험금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는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2. 4. 5.] [법률 제18684호, 2022. 1. 4., 일부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전문개정 2010. 6. 8.]